정릉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83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으로부터 수탁 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단체 및 법인 등에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시설명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 성북구 솔샘로5길 92
- 규 모 : 대지 1,053㎡/ 연면적 1,599㎡(지하2층, 지상3층)

층 별	면적(㎡)	용 도	비고
합 계	1,599.91		
지하2층	272.48	온터어린이집, 기계실	*어린이집 위탁별도 (여성가족과)
지하1층	344.58	온터어린이집,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컴퓨터실	
지상1층	451.31	주민사랑방, 이어쉼, 강당, 자원봉사자실,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영양관리실	
지상2층	279.36	관장실, 운영지원사무실, 하늬바람실, 꿈바람실, 솔바람실, 건강관리실, 여자화장실, 세탁실, 조리실	
지상3층	252.18	통합사무실, 꿈이룸실	
옥탑	47.52	옥상	연면적 제외

○ 위탁기간 : 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선정

○ 위탁사무의 범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

-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지역조직화 기능)
-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 기타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

○ 소요예산 : 1,013,977천원(2021년 기준)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를 계속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성북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은「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에서 5년간(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수탁하여 운영하던 중, 2021년 9월 24일 수탁운영 반납 신고서가 접수됨에 따라 재위탁하려는 것임.

〈정릉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소재지	시설현황(㎡)	연간사업비 (2021년 기준)	위탁기간	운영주체	운영 조직
성북구 솔샘로5길 92(정릉3동)	전용공간 1,599㎡ (지하2/지상3)	총 1,013,977천원 - 인건비 : 899,879천원 - 운영비 : 97,850천원 (시: 85.5%, 구: 14.54%) - 기 타 : 16,230천원 (시: 95%, 구: 5%)	2019.01.01. ~ 2023.12.31.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관장 포함 60명

○ 위탁기간은 위탁협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위탁사무의 범위는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임.

나. 종합의견

○ 사회복지관 운영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되고, 5년간 위탁할 수 있으며,

○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의 재위탁은 기존 수탁체와의 위·수탁기간 만료 전 수탁자가 변경되는 만큼 수탁체 선정시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위탁 기관을 선정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로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84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고령화 시대 지역 어르신들의 낙상예방을 위한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 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제고하고자 성북마을관리소를 설치함에 따라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 시설 운영을 위탁하여 민간의 공공서비스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성북마을관리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성북구의회의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 위탁 시설명 : 성북마을관리소
- 위 치 : 성북구 정릉로38라길 32(정릉동)
- 규 모 : 지상1층(연면적 36㎡) 모든 시설물과 장비

○ 위탁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1년)

○ 위탁사무 : 성북마을관리소 관리·운영

-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
-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치 서비스 제공
-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교육

○ 수탁자 선정방법

-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신청 법인 적격 심사 후 선정(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항목별 점수 합계하여 최다득점자 선정)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

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할때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사무 내용)

1.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자활·취업·창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3. 문화·예술·영상·도서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교육·교양·체육·공원 관련 시설 운영 및 관련 사무
5.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마을만들기 지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보훈 회관 운영 및 관련 사무
8. 그 밖에 청소, 경비, 교통, 주차장 운영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성북마을관리소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성북마을관리소는 어르신 낙상예방과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임.

○ 민간위탁하려는 '성북마을관리소'운영에 관한 사무 내용과 위탁현황은 다음과 같음.

1. 어르신 낙상예방 맞춤형 주택개조 및 생활밀착형 주거서비스 제공
2. 집수리 전동공구 및 수공구 무료 대여
3. 소규모 공동주택 유지관리 서비스 상담 및 서비스제공
4. 주택관리 및 수선을 위한 주민대상 기술 교육

〈성북마을관리소 민간위탁 현황〉

소재지	시설규모	연간사업비	위탁기간	운영 조직	비 고
성북구 정릉로 38라길 32	지상1층 연면적 36㎡	131,528천원 (구비)	2022.01.03. ~ 2022.12.31. (1년)	2명	SH공사가 매입한 빈집을 활용하기 위해 2021년 3월 SH공사와 무상사용대차계약 체결 후 2021년 8월 리모델링 준공

나.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북마을관리소 관리 운영 사무는 어르신 맞춤형 주택개조 등 종합주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무로써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

○ 따라서, 「민간위탁조례」 제4조제1항3호에서 규정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함으로 민간위탁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위탁 동의안은 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안정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문화 정착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는 전체가구 중 노인가구가 거주하는 노후주택 비율은 59.7%[2]이르고, 고령자 안전사고 중 72.1%는 주택 안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낙상은 사망에 이르는 두 번째 요인[3] 임을 감안할 때 성북마을관리소 운영은 필요하다 사료되며, 운영의 특성상 해당분야에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경험에 기반을 둔 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료됨.

○ 또한 구의회 동의 후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출처: 서울시 & 2018년 주택산업연구원>
3) 2016년, 한국소비자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19.화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5. 성북구청장 제출(의안번호 385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19.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민지선 복지문화국장)

가. 제안이유

○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급식지원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기준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정 목적(안 제1조)

○ 아동 급식지원 대상, 방법, 신청 절차 등(안 제2조~제5조)

○ 아동급식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8조)

○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아동급식위원회(안 제10조~제17조)

○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제5항

○ 예산조치 : 조치 필요

○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07. ~ 2021. 10.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적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아동복지법」제35조[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5]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

4)「아동복지법」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5)「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아동급식지원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사료됨.

○ 제정안은 법 취지에 맞춰, 급식지원 대상자를 위한 지원 신청 및 절차와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운영과 급식업체에 대한 위생·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에 대한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성북구 결식아동지원 현황〉

급식유형 / 계	단 체 급 식 소			꿈나무카드	도시락
	소 계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1,496명	764명	763명	1명	627명	105명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아동급식 사업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 분야 사업지침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아동급식 사업의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제정안은 적절하다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안향자 의원 외 16명 발의 (의안번호 389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19.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안향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함.

나. 주요내용

○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안 제5조)

○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6조)

○ 지도·감독(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6]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제2항[7]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있고,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적극적인 지원과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토록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장애인의 가족 구성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6)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장애인 가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을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건강가정기본법」 제25조(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의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성북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장애인을 둔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어 보이고, 2020년 3월 개소한 성북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유사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 방지

나. 수정 내용

○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89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9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기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유사 사업이 중복될 수 있는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 ---------- ---------- ---------- ----.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제1항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가족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과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

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3. 장애인 가족의 긴급 돌봄 등 지원
4.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6.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7.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 내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이인순 의원 외 10명 발의 (의안번호 396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19.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인순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보호를 위한 시설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7조)

○ 관련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예산지원 근거,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장애인 보호를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제정안은 장애인범죄, 장애인 거주시설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장애인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수행할 업무 범위를 명시하며,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한 장애인 관련 시설의 정기점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과 예산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장애인 대상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2015년 이후 발생 80.5% 이상) 이며,

[연도별 장애인대상 범죄 발생 현황] (판결문 기록조사 결과)

연 도	빈 도 (건)	비 율 (%)
2000년 이전	12	0.9
2000~2004년	11	0.8
2005~2009년	19	1.5
2010~2014년	211	16.2
2015년 이후	**1,047**	**80.5**
전체	1,300	100.0

* (출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 특히,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자의 직업 중 장애인보호직종이 약 2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애인 관련 시설의 정기점검과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 교육 등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현재 부산광역시, 시흥시, 부여군에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

[장애인대상 범죄 가해자 직종 구분] (판결문 기록조사 결과)

구 분		가해자	
		빈도(건)	비율(%)
장애인보호 직종 여부	장애인보호직종아니다	256	72.1
	장애인보호직종이다	**99**	**27.9**
	계	355	100.0
장애인보호 직종 유형	장애인복지(보호,수용)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38	38.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9	9.1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및 활동지원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8	8.1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의료기사 포함)	7	7.1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 교직원	8	8.1
	교직원 및 강사 등(유치원, 초중고 및 학원 포함)	11	11.1
	아동청소년시설 및 단체장 등 그 종사자 등	7	7.1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	9	9.1
	기타	2	2.0
	계	99	100.0

* (출처) 장애인 범죄피해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8)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등을 위한 관련기관의 협력체계구축과 장애인 관련 시설점검 및 교육 등을 통한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9조[8]에서 장애인의 자립과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 대상 범죄의 발생 추이 등을 감안 하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됨. 또한 조례제정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범죄 예방과 대응,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사료됨.

8)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설명에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두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장애인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안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안제3조제2항을 “삭제”

○ 안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 제8조 중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6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19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의 설명에 시행규칙 조항을 근거로 두어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장애인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 안 제3조제2항을 “삭제”

○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 안 제8조 중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를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안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안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다”를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한다.

안 제8조 중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으로 수정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2. (현행과 같음)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생략)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 ----------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제8조(협력체계 구축) ---------- ----------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 기관들과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
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2. 피해 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
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
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 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련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박학동 의원 외 11명 발의 (의안번호 400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박학동 의원)

가. 제안이유

○ 항일독립운동과 그 유적, 항일독립운동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성북구민의 역사관 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항일독립운동, 항일독립운동 유적, 항일독립운동가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제3조)

○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시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07. ~ 2021. 10.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발전하여 역사의식을 재정립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9]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10]에는 지방자치단체는

---

9)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10)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공훈 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은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항일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성북구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성북구 독립운동가 현황

동명	명수	독립운동가
계	122	
성북동	42	김동삼, 김광섭, 오세창, 이길용, 임 규, 최익환, 한용운, 김방우, 김복진, 김수룡, 박노태, 배성룡, 성봉진, 유진희, 이근창, 최용덕, 문석준, 박홍식, 이완기, 정진숙, 김석윤, 김하경, 노현중, 방용모, 서광훈, 손용우, 안복산, 이종린, 정태식, 최두선, 최차손, 현학손, 강주환, 국순만, 김기진, 김성룡, 박용선, 박원장, 이성학, 장동옥, 조병호, 한순기
돈암동	40	안재홍, 정정화, 조소앙, 김규식, 김재황, 신형균, 강영준, 강천룡, 권유근, 김동익, 박 철, 신락현, 심정섭, 장익민, 조성훈, 김대봉, 김월옥, 김학성, 노국환, 박래수, 송인헌, 이기석, 이용상, 이정용, 이현우, 편강청덕, 홍석표, 강영옥, 김원근, 김원정, 김재권, 김진홍, 손경순, 송재옥, 암본정우, 유석복, 전명선, 김영순, 경기현, 이규갑
정릉동	16	김교신, 김의한, 유우석, 이규창, 장건상, 나중소, 김영규, 유영민, 유충성, 이강, 이은숙, 조화벽, 주영복, 김아동, 정종진, 황응선, 권태림
안암동	19	김현국, 오세덕, 최승우, 피한봉, 김순원, 김양복, 김종윤, 손진태, 김상준, 김용태, 양원길, 오세진, 이기을, 이병우, 이재성, 최경옥, 한홍택, 홍기문, 황금수
종암동	3	이원록(이육사), 이종암, 이극로
월곡동	1	정만산
장위동	1	이윤장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임현주 의원 외 13명 발의 (의안번호 390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21.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강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안 제1조~안 제3조)

○ 예산확보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안 제5조~안 제6조)

○ 관리주체, 정기점검 등의 유지관리, 사무의 위탁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대장작성·관리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안 제11조)

○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안 제12조~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야외운동기구는 특성상 외부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나, 이에 대한 설치 및 관리기준이 미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운동기구의 노후·파손 등으로 사용자 안전에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런 배경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 “야외 운동기구 세부 관리 기준 마련(조례·지침)” 및 “영조물배상공제 가입 의무 규정” 을 신설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 바, 전국 71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는 11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

○ 현재 성북구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쉼터, 정릉천 등 54곳에 822기 설치되었고 이중 2곳, 9기는 영조물배상공제 미등록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현황〉

(2021.10월 현재)

부서명	위치	설치내역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여부	관리주체
합계	54곳	822기	813기 등록 9기 미등록	
공원녹지과	북한산도시자연공원 등 48곳	667기	등록	공원녹지과
도시재생과	삼덕마을 주거환경관리구역 1곳	3기	해당없음	도시재생과
어르신복지과	화랑로5길8 (월곡2동경로당 옆) 1곳	6기	미등록	어르신복지과
치수과	성북천 등 4곳	146개	등록	치수과

나. 주요내용

○ 제정안은 야외체육시설의 설치장소에 따른 관리부서 외의 시설 전체의 유지관리를 책임지는 총괄부서를 지정하는 등 관리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설치장소 및 설치기준을 정하여 무분별한 설치를 방지하고자 하였음.

○ 또한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강화 및 이용주민의 피해보상에 따른 영조물배상공제에 등록·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관리부서와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일제점검 시행을 통해 안전한 시설이용이 가능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영조물 배상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반복적인 의미의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나. 수정 내용

○ 안 제9조제1항 중 “이상 일제조사·점검을”를 “이상”으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0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21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반복적인 의미의 조문을 정리하여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9조제1항 중 “이상 일제조사·점검을”를 “이상”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 중 “이상 일제조사·점검을”을 “이상”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 ---------- ---------- ---------- 이상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문화체육과를 말한다.
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청장이 설치한 야외운동 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

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3.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

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

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주체) ①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②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내문 게시)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

을 부착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대장작성・관리) 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관리부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체력단련시설을 파손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별지서식]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별표] 안내표시문(제8조 관련)

[별지 서식]

(앞면)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 (제11조 관련)

관리번호	성 북 구 -

시 설 명					
위 치					
설치면적	㎡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사 업 비	천원(국비 천원, 시비 천원, 구비 천원)				
설치현황	"전경사진"				
	기 구 명	수량	단가	금액	설치년월

(뒷면)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내 용
		직급	성명	
관리현황				

[별표]

안내 표시문 (제8조 관련)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번호	
기 구 명	
설치년월	
관리부서	
연 락 처	

참고자료 :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

제8조(지방 체육의 진흥) ①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 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양순임 의원 외 13명 발의 (의안번호 397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21.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양순임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구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과 구민에게 성북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을 담당할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제2조)

○ 해설사 운영계획 수립 (안 제3조)

○ 해설사의 자격, 직무, 선발 등에 관한 내용(안 제4조~제6조)

○ 교육 및 운영에 관한 내용(안 제8조~제9조)

○ 예산지원 및 해설사 배치(안 제10조~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

○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과 해설사 자격 및 직무, 해설사 선발 및 교육 등을 규정하고, 교통비 등을 포함한 해설사의 활동비 지원 근거와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따른 전문기관 위탁 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음.

○ 문화관광해설사는 지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도입된 것으로 2011년「관광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설사 선발 및 육성에 대한 근거 규정이 법제화 됨.

○「관광진흥법」제48조의8[1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같은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종합의견

---

11) **「관광진흥법」제48조의8(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8조의6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배치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본 제정안은「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정하여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성북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여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 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해설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수정

나. 수정 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규칙으로 인정하는”을 “정하는”으로 수정.

○ 안 제9조제2항 중 “일수는 월 5일(총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를 “시간과 횟수는”으로 수정.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397

제안 연월일: 2021년 10월 21일
제 안 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1. 수정이유

○ 문화관광해설사 자격 조문을 명확히 하고, 해설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수정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 중 “규칙으로 인정하는”을 “정하는”으로 수정.

○ 안 제9조제2항 중 “일수는 월 5일(총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를 “시간과 횟수는”으로 수정.

3.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타사항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규칙으로 인정하는”을 “정하는”으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를 “시간과 횟수는”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① ---------- ---------- ---------- 정하는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운영 등) ① (생 략)	제9조(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 시간과 횟수는 ----------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자원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성북구를 방문하는 관광객과 구민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성북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 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

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선발·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성북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⑤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성북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
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성북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문화재,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치) 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

영하여야 한다.

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

2. 해설사의 활동 태도

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

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

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해촉 등) 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1. 10. 22.금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1. 10. 07. 정기혁 의원 외 11명 발의 (의안번호 398호)

나. 회부일자: 2021. 10. 0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85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1. 10. 21.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정기혁 의원)

가. 제안이유

○ 성북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역사문화인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11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 입법예고

- 기 간 : 2021. 10. 07. ~ 2021. 10. 13.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가. 제정취지

○ 본 조례안은 성북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북구 역사문화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제정하는 것임.

○ 제정안은 역사문화인물과 기념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역사문화인물 선정과 자료 발굴 및 육성, 공적 시설물 건립, 기념물 제작 설치, 기념 및 추모 행사 등 관련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 또한 역사문화 관련 학계, 기관 및 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문화인물 선정의 공정성과 정당한 사업 지원을 위한 절차도 마련하고 있음.

나. 종합의견

○ 본 제정안은 성북구 역사문화인물의 기념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우리 구에 분포되어 있는 역사문화인물의 관련 자료를 발굴·육성 하는 등 기념사업을 통해 역사문화인물의 위엄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됨.

○ 참고로, 성북구의회 성북역사문화자원 정책개발 연구단체 자료에 따르면 성북구는 서울시 내 가장 많은 역사문화인물이 거주·활동한 지역으로, 한용운, 이육사, 권진규, 채동선 등 독립운동, 문학, 미술, 음악 여러 분야의 유명인물이 존재하며, 유형별로는 독립지사 100여명, 예술분야 중 문인 70명이상, 화가 약 40명, 음악가 약 20명, 이외 다수의 인물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구단체는 이와 관련하여 성북구 역사문화 인물들의 조사·연구를 통해 지역 주민들과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 회의록 참고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